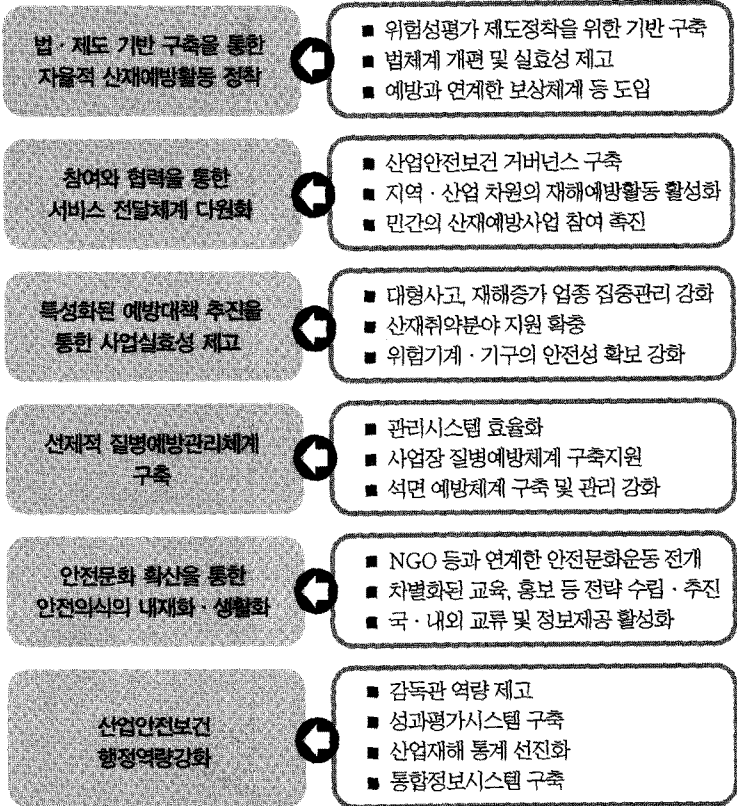


고용노동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('10~'14)

I. 정책 목표와 과제

비전	근로자가 안전한 삶과 행복을 영위하는 안전행복사회 구현
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4년 재해자수 6만명대로 감소 → 재해율 0.5%대 달성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착
기본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·사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제도화 민간참여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산재취약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

추진전략 및 과제



II. 중점 추진과제

1. 법·제도 기반 구축을 통한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

- 현행 법체계는 위험을 지정해 놓고 관리기준과 방법 등을 위험종류별로 규정하는 기준준수 중심의 위험관리방식
 - 이는 복잡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책임을 해태하는 요인으로 작용
-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한 제도·법체계 개편 및 예방과 연계한 보상체계 도입 등 노·사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촉진

- (1) 위험성 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
- (2) 법체계 개편 및 집행의 실효성 제고
- (3) 예방과 연계한 보상체계 등 도입

2.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전달체계 다원화

- 노동부, 안전공단 위주의 공급자 중심 운영으로 시장수요는 제한적이고,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도 매우 취약
-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,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
 - 지역 및 산업차원의 다양한 재해예방사업을 전개
 - 민간의 역할 확대 및 역량을 제고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사업 참여를 촉진, 공급주체 다원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

- (1)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
- (2) 지역 및 산업차원의 재해예방활동 활성화
- (3) 민간의 산재예방사업 참여 촉진

3. 특성화된 예방대책 추진을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

- 건설 : 제조 등 전통적 재해다발 업종의 재해비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,
 - 서비스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따른 재해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

- 건설·제조·화학·서비스업 등 업종의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수립·중점 추진하는 한편,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

- (1) 대형사고, 재해증가 업종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
- (2) 산재취약분야에 대한 지원 확충
- (3) 위험 기계·기구의 안전성 확보 강화

4. 선제적 질병예방 관리시스템 구축

- 유해화학물질 사용, 신규물질·신공정의 개발이 전산업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추세
-그러나, 현행 법제도 및 사업장 보건관리 시스템으로는 상황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곤란
- 직업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선제적 직업병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,
-유해·위험 관리시스템 효율화, 소규모 사업장 기초안전보건서비스 지원 확대, 석면 유해물질에 대한 지도·감독 등 관리 강화

- (1) 관리 시스템 효율화
- (2) 사업장 질병예방 체계 구축 지원
- (3)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

5.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보건 의식의 내재화·생활화

- 오랜 관습·관행, 조기안전교육 등의 부재로 의식전환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
-대형사고 발생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 준수 등에 기인하고 있어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의 정착 없이는 산업재해 감소가 불가능
-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이 선진국 수준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수행

- (1) NGO, 노·사 등과 연계한 안전보건문화 운동 전개
- (2) 차별화된 교육, 홍보·캠페인 전략 수립·시행

(3) 산업안전보건 국내·외 교류 및 정보제공 활성화

6.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 강화

-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실성 있는 산재예방정책의 수립 및 강력한 지도·감독이 필수적
- 집행 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 사업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및 과학적·체계적 산재예방 정책 수립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제고

- (1) 감독 역량 제고
- (2) 성과평가시스템 구축
- (3) 산업재해 통계 선진화
- (4) 통합정보시스템 구축

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회 홈페이지(www.kiha21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☺